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9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명확화 및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 확대
- 나. 이용자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 혜택 및 편의 향상
- 다.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여 내용 이해도 제고

2. 주요내용

- 가. **【내용 변경】** 근거 법령의 명칭 개정 적용과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내용 변경(안 별표)
 - (관련 법령 개정) 사용료 감면 근거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명 적용
 - (친환경·저공해 정책 부응)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출입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 (저출산 해소 방안 확대) 두 자녀 이상 가정(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사용료 할인율을 상향 규정(30% ⇒ 50%)
- 나. **【용어 정비】**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등 [별첨 8]

- 1)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2) 「주차장법」 제2조, 제19조, 제19조의3
-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다. 협의: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1]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 [별첨 2]
- 3) 입법예고(2024. 9. 12. ~ 10. 2.) 결과: 의견 없음 [별첨 4]
- 4) 교육규제심사: 대상 아님
-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첨 5]
- 6)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 6]
- 7)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7]

[별첨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한다.

제8조 중 “대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5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6호의 바목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를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6호의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차.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의 비고 제6호의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간주차“라 함은 1일 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 직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하.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u>적재한</u> 경우</p> <p>4. ~ 7. (생략)</p> <p>제8조(변상 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u>태만히 하여</u>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p> <p>[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th> <th style="width: 50%;">정기주차</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0,000</td> </tr> <tr> <td>2급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r> <tr> <td>3급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r> </tbody> </table> <p>※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p> <p><비고></p> <p>1. · 2. (생략)</p> <p>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p>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p>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p>제7조(사용 제한)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실은</u>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변상 책임) ----- ----- <u>게을리하여</u> -----</p> <p>[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th> <th style="width: 50%;">정기주차</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0,000</td> </tr> <tr> <td>2급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td> </tr> <tr> <td>3급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r> </tbody> </table> <p>※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p> <p><비고></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p>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p>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 마. (생략)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사 ~ 아. (생략)

자.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사. ~ 아. (현행과 같음)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차.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개정조례안 전문(全文)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제4조(사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세입 조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시간) ① 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 ② 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변상 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간주차“라 함은 1일 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 직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하.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규정을 확대함에 따라 자체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감면 규정을 확대함에 따라 자체 수입의 일부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각 감면 규정의 적용 비율에 따른 자체 수입의 감소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현재 감면 대상 차량이 얼마나 출입하는지, 사용료 발생 시 어떤 할인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추계 불가)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조성우(02-399-9221)

[별첨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총무과	통보일	2024. 9. 11.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7조제3호 안 제8조 안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개정된 근거 법률명 반영, 충전 목적의 전기자동차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두 자녀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사용료 할인을 상향, 용어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명확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규정 확대를 통해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 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6]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2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조성우	전화번호	02-399-9221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09월 0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09월 09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09월 09일</p>				

[별첨 7]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조성우 (02-399-9221)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얼(위원장), 김상일, 이민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7조, 제8조,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령인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의 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확대 변경하고,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여 내용 이해도를 제고하기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안동의

[별첨 8] 관계법규 등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주차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조례 제7634호(2020. 7. 1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2호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